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화순군수
 - 나. 회 무 일 자 : 2002. 3. 18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2. 3. 18
- (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- '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를 폐지하였으나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상담과 영농현장의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
- 면지역에 “농업인 상담소”를 설치, 운영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농업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면지역에 “농업인 상담소” 설치, 운영 근거 마련
“지소”를 “농업인 상담소”로 개정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'98년 1차 구조조정시 폐지되었던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재설치한다는 것으로서, 현재까지 근거조항없이 8개면에 운영되고 있음. 아울러 의회차원에서 94회 임시회(양동복의원)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임.
- 도내의 20개시군(북포, 화순제외)에서 읍면상담소운영 16개 시군, 법제화 13개 시군, 순수삼정운영 3군임. 법제화 13개 시군에서 관할구역이 1면이상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5개임.

- 보다 적극적인 농정 서비스 증진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업 인상담소를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나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와 상담소를 법제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및 추가 3개소 개설에 따른 비용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-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의결"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0조의 제목 중 “지소”를 “농업인 상담소”로 하며 동조 중 “지소”를 “농업인 상담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지소의 설치)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 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 으며,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·위 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</p>	<p>제10조(농업인상담소의 설치).....농업인상담소.....농업인상담소...농업인상담소...</p>